

# 졸업

학칙에서 정한 의무학기를 모두 마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학기 내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업연장자](#)가 되어 추가 학기 등록을 해야하며, 졸업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는 개인 의사로 [졸업유보](#)할 수 있다.

□

## 목차

- [1 졸업요건\(서울\)<sup>\[1\]</sup>](#)
- [2 졸업사정\(서울\) 기준](#)
- [3 졸업요건](#)
- [4 최소 졸업 이수 학점<sup>\[2\]</sup>](#)

## 졸업요건(서울)<sup>[1]</sup>

- 가. 각 대학별 최저 이수 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나.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다.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라.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마.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교양필수 학점에 포함된 셀프리더십(HELP4)는 이수하지 않아도 필수과목에서 면제되며 다른 교과목 학점으로 이수할 수 있음

## 졸업사정(서울) 기준

- [졸업사정](#) 문서 참고

## 졸업요건

1. 대학별 최저 [졸업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기초필수](#)(또는 [교양필수](#)) 및 [기초택필](#)(또는 [교양택필](#)), [전공학점\(전공핵심\(필수\)\)](#) 및 전공핵심, [전공심화](#) 이수 기준 충족)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3. 대학별 [핵심교양](#) 최소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4. 대학별 [사회봉사](#) 및 [산학협력교육영역](#) 이수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2013학번 신·편입생부터 적용)
5. 전학년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
6. [졸업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만 해당),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2016.8월 졸업자부터적용)
7. [영어전용강좌](#) 이수 한 자 (2007학번부터 / 일부 학과 제외)

8. [공학인증](#), [건축학인증](#), [경영학인증](#), [소프트웨어특성화과정](#)을 만족하는 자(해당자의 경우)
9. [PBL강좌](#) 의무 이수한 자 (2017학번부터)
10.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졸업인증제](#) 통과한 자 (2014학번부터)
11. [인턴십 의무 이수제](#) 이수 여부
12. 기타 학과별 졸업내규 충족 여부

## 최소 졸업 이수 학점<sup>[2]</sup>

대학 및 학과(전공)별 졸업 이수 학점이 다르다. 졸업이수 학점별로 학년별 [수료인정학점](#)도 다르다.

캠퍼스	대학	최소 졸업이수 학점	
	공과대학(건축학부, 소프트웨어전공 제외)	130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	162	
	공과대학 소프트웨어전공	134	
	의과대학 의학과	160	
	인문과학대학	126	
	사회과학대학	126	
	자연과학대학	130	
	법과대학	126	
	정책과학대학	126	
	서울	경제금융대학	126
경영대학		126	
사범대학		130	
생활과학대학		126	
음악대학		126	
예술 체육대학		126	
간호학부 간호학과		130	
간호학부 간호학과(야)		120	
국제학부		126	
산업융합학부		120	
공학대학(건축학전공, 융합공학과 제외)		130	
공학대학 건축학전공		162	
공학대학 융합공학과		12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40	
약학대학		150	
ERICA		과학기술융합대학	130
		국제문화대학	126
		언론정보대학	126
		경상대학(회계세무학과 제외)	126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	120	
	디자인대학	126	
	예체능대학	126	

- 의과대학은 별도로 적용

- 사범대학의 경우 교직이수를 위하여 별도 이수 기준을 추가로 만족해야 함
  - 기초필수 및 기초택필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학년의 평점평균이 1.75 이상인 자 (조기졸업 해당자는 4.00 이상)
  - 졸업 논문 또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해당)
  - 영어전용강좌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1. ↑ 출처: [2020학년도 신입생 캠퍼스 가이드북](#)

2. ↑ 학칙 제47조 1항1호 <별표 5>